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 6. 27.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김지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2조)
- 허가권자(안 제3조)
- 심사위원회(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를 확대 및 명확히 하였으며,
- 안 제4조(심사위원회)제3항에서는 심사예외 규정에서 “10명 미만의 의원” 문구를 안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공식적인 행사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임을 감안하여 해당 문구를 삭제함.

○ 검토 결과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의 기준 중 제가목에서는 “해당 회의에 3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의 규모의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를 “개최”가 아닌 “참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 APEC 등의 권위 있는 국제회의들 또한 개최국은 한 곳인 것을 고려할 때, 안 제2조제2호의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조문을 현실화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문헌이나 인터넷 등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및 사업이 실행되는 실제 현장의 분위기, 환경·문화적 요인, 지역 주민의 반응 등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해당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우리 구 특성과 실정에 맞게 해당 정책을 도입하는 등 의원의 정책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마다 전공 및 관심 분야가 다르므로, 관심 분야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습득하는 경험의 양과 질 모두 향상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새로 신설되는 제2조의 각 호는 안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단순한 관광 및 외유성 출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우리 구의 예산을 지원받는 만큼, 의원들은 안 제15조에 의거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임.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0
----------	-----

발의연월일: 2024. 5. .

발 의 자: 김지연, 유승용, 최봉희,  
이성수, 남완현, 양송이,  
박현우, 전승관, 우경란  
의원(9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적용범위(안 제2조)
- 나. 허가권자(안 제3조)
- 다. 심사위원회(안 제4조)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4. 6. 4.~ 6. 8.)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개최하는”을 “참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 중 “그 밖에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7. 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 중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10명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u>개최하는</u>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p> <p>3. ~ 5.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6. <u>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u>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p> <p><u>&lt;신 설&gt;</u></p>	<p>제2조(적용범위)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참가하는</u> ----- -----</p> <p>3. ~ 5. (현행과 같음)</p> <p>6.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외국 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u></p> <p>7. <u>의원이 관심분야에 따라 기획한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u></p> <p>8. <u>서울특별시</u> ----- --</p> <p>9. <u>그 밖에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u></p>
<p>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p>	<p>제3조(허가권자) -----</p>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  
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1  
0명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  
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의원-----  
-----  
-----.

제4조(심사위원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제  
2조제1호-----  
-----  
-----.